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1. 10.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발의일자 : 2008년 10월 30일

나. 발 의 자 : 김종태 의원 외 6인

다. 회부일자 : 2008년 11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14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8년 11월 6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김종태 의원)

가.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일반가정에서 도입·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 지원금액은 1가구에 1대분에 한하여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8조의2제2항)

○ 신청을 원하는 자는 동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영수증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이 구청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송부하면 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신청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함(안 제8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식)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정에 1가구당 1대분에 한하여 구입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2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감량기기 보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타 자치단체는 양천구, 서초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각 가정에서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건조(감량)하였을 경우에도 관내 거점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건조된 물량만을 별도 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감량(수분제거)효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시행방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도 있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주민 홍보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더 나은 사업성과를 거두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칙 중 “2009년 1월 1일부터”를 “2009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5. 審査結課 : 修正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72 호

제안년월일 : 2008. 11. 6
제 출 자 : 송수희 위원 외 1인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시행방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도 있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주민 홍보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더 나은 사업성과를 거두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칙 중 “2009년 1월 1일부터”를 “2009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부칙 중 “2009년 1월 1일부터”를 “2009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2

발의년월일 : 2008년 10월 일
발 의 자 : 김종태 의원외 인

1. 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일반가정에서 도입·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제8조의2제1항)

○ 지원금액은 1가구에 1대분에 한하여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안제8조의2제2항)

○ 신청을 원하는 자는 동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영수증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이 구청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송부하면 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신청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예산조치 : 별도 협의

○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은 1가구에 1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액은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로 하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감량기기를 설치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할거주지 동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감량기기 구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 연월일이 명기된 영수증을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동장은 매월 접수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달 3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장이 송부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⑥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①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은 1가구에 1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액은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로 하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감량기기를 설치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할거주지 동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감량기기 구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 연월일이 명기된 영수증을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동장은 매월 접수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달 3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장이 송부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